

야생동물 폐사 신고서(신고확인증)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일
------	-----	------	----

신고인	상호(성명)	연락처
	사육장소	

야생동물 정보	학명	수량	폐사사유	처리계획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의 폐사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사진, 영상 등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.....
자르는 선
.....

제 호

야생동물 폐사 신고확인증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폐사를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

귀하

작성방법

야생동물 정보의 폐사사유란에는 야생동물의 폐사사유와 그로 인한 폐사일을 기재합니다.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결재	→	신고확인증 작성·발급
--------	---	----	---	----	---	----	---	----------------

신고인

처리기관: 시·군·구